

녹색화학센터 지정서

- 지정번호 : 제 호
- 기관명 :
- 대표자 :
- 소재지 :
- 센터장 :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

직인